

海岸保全地區의 維持 管理

해안법이 제정된 경위

일본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기상조건에서도 경제조건에서도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도시의 태반이 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또 해안은 육지와 바다의 접점이므로 어항, 항만으로서 또 주민의 휴식의 장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해안도 평소 침식, 고조, 파랑등에 의한 자연의 위협에 휩쓸여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해안의 실태에 대응하고 국토의 보전과 지역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해안에 관한 행정의 적정한 집행이 필요하나 '56년에 해안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해안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법제가 없이 '50년에 와서 겨우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당시는 제2차대전중에 있어서의 해안방호시설의 황폐에

의하여 해안재해는 매년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 이에대한 발본적 시책의 필요에 직면하였다. 일본에서는 '50년도부터 해안보전사업을 위한 소요 재정조치를 강구하고 해안방호시설의 정비를 도모키로 하였으나 해안에 관한 기본적 법제가 없어 재정상의 조치와 함께 법제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50년 11월부터 건설성을 중심으로 하여 해안보전법안의 입안에 착수하고 익년 '51년 2월에 성안하여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코자 관계 각 성청간에 절충을 거듭하였으나 해안의 소관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국회 제출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후에도 해안법의 제정에 관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소

관의 문제에 대한 조정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53년에 三重, 愛知현의 해안에 큰 재해가 발생하고, 그 후에도 해안재해가 빈발하여, 이를 계기로 다시 해안법 제정의 여론이 높아져 '56년 3월에 이르러 겨우 국회에 해안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56년 5월에 해안법이 제정되어 해안행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행정의 소관이 명확하게 정해짐과 동시에 동법에 근거하여 관계 성청간에 협의 조정을 거쳐 해안보전시설의 축조기준이 정해짐으로써 기능적 정합을 유지하는 해안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해안보전구역내에 있어서는 해안보전의 입장에서 일정 행위의 규제가 가능하게 되어 토석의 채취, 해빈의 굴착등의 해안보전상의 유해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해빈의 황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안보전구역의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되었다.

'56년5월에 해안법이 제정되어 해안행정에 대한 국가 책무와 행정 소관이 명확하게 정해짐과 동시에 이 법에 근거하여 관계성 청간에 협의 조정을 거쳐 해안보전시설의 축조 기준이 정해짐으로써 기능적 정합을 유지하는 해안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해안법에 근거한 해안 행정의 개요

(1) 도도부현지사는 제방·호안등 해수의 침입이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해안보전시설)을 신설, 개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나 해안보전에 유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한 구역을 해안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관리자가 그 관리를 행하는 것이다(해안법 제3조, 제5조).

(2) 해안행정의 소관은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3) 해안관리자가 실시하는 해안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외에 특히 중요하고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가 대신 실시 할 수 있다(해안법 제6조, 제27조).

(4) 해안보전시설은 해안관리자 이외의 자가 매립, 도로 건설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시설은 완성후 해안관리자가 관리하는

해안의 구분	주 무 대 신	해안관리자
항만해안	운수대신	항만관리자의장
어항해안	농림수산대신	어항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의장
농지해안	농림수산대신	도도부현지사 (예외적으로 시정총장의 경우도 있음)
기타의해안	건설대신	

해안보전시설과 같이 일체적으로 해안보전의 기능을 완수하게 되므로 일정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축조기준이 정해진 외에 이들 공사에 대하여 승인제도를 설치하여 공사시행자가 달라도 일정한도의 질과 기능을 가진 해안보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해안법 제13조, 제14조).

(5) 해안보전에 유해한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해안법 제7조, 제8조).

(6) 해안관리자 또는 이에 대신하여 국가가 행하는 해안보전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에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비용부담이 명확하게 되었다(해안법 제19조).

(7) '66년3월 해안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특정 해안의 제도가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기상, 해상을 공통하는 일련의 해안중 해안보전사업이 2개성 청이상의 소관에 걸치는 것으로서 그 사업규모가 크고 일련의 사업효과가 대단한 지역을 정령(政令)으로 정하여 그 지역에 있어서의 해안 보전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에 대하여는 타의 일반 해안에 비하여 고율로 되어 있다(해안법 제26조, 제27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제8조제2항).